

제 1 주제

건설재해예방 특별대책

윤 석 춘

〈노동부산업안전국장〉

1. 현 황
2. 재해증가 원인
3.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 특별대책

목

차

1. 현	황	-----	7
2. 재해증가 원인		-----	10
2-1.	재해발생 여건확대		
2-2.	사회적 현상		
2-3.	재해예방 관리, 감독 능력의 한계		
2-4.	근로자 안전의식의 취약성		
2-5.	향 후 전 망		
3. 산업재해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 특별대책		-----	13
3-1.	기 본 방 침		
3-2.	특 별 대 책		
3-2-1.	재해다발 제조업체 특별관리		
3-2-2.	건설업 분야 재해예방 활동강화		

1. 현 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 지난해에는 산업안전국 신설과 지방관서 산업안전과 설치를 계기로 각종재해 예방시책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88년에 비하여 재해율 18.95
재해자 8,202명
사망자 201명 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하여 재해 예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금년 1/4 분기중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 건설업 분야에서 재해자수 2,480명, 재해율 26.92% 증가
 - 재해자 비중에 가장많은 제조업 분야의 재해율도 당초목표 15% 감소보다 적은 7.4% 감소
 - 특히 대부분의 산업에서 재해율은 당초목표 15% 감소에 훨씬 미달한 2.17%로 감소
 - 오히려 재해자 2,117명, 사망자 231명 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 산업해발생현황

구분	'89. 1/4			'90. 1/4			증감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총계	6,106,972	28,035 (335)	0.46	6,766,892	30,152 (569)	0.45	△ 2.17
광업	88,194	2,288 (78)	2.59	71,696	2,087 (122)	2.91	12.36
제조업	3,198,063	17,190 (130)	0.54	3,339,847	16,816 (165)	0.51	△ 7.41
건설업	1,684,384	4,324 (68)	0.26	2,042,494	6,804 (110)	0.33	26.92
전기가스 수도업	38,080	47 (1)	0.12	38,355	64 (1)	0.17	41.67
운수보관 통신업	516,028	2,615 (65)	0.51	558,179	2,901 (96)	0.52	1.96
기타	572,223	1,571 (23)	0.27	716,321	1,480 (45)	0.21	△ 22.22

* 산업보험 요양 승인 기준

◦ '90. 1/4분기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	기타	비고
'90	30,152	2,087	16,816	6,804	64	2,901	1,480	
'89	28,035	2,288	17,190	4,324	47	2,615	1,571	
증감(%)	+7.6	-8.8	-2.2	+57.4	+36.2	+10.9	-5.8	

*노동부 자료

○ '90. 1/4분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년 도	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 사고	기 타
'90	569	122	165	140	1	96	45
'89	338	78	103	68	1	65	23
증감(명)	+231	+44	+62	+72	0	+31	+22
증감(%)	+68.3	+56.4	+60.2	+105.9	0	+47.7	+95.7

○ '90. 1/4분기 건설 물량 발주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89	'90	증감(%)	비 고
금 액	2조 2529	3조 9857	+76.9	

* 건설협회 잠정 집계 자료

2. 재해 증가 원인

2-1. 재해 발생 여건 확대

-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공사 불량 폭주 (전년도 동기 대비 76.9%증가)
 - 주택 200만호 건설등 정부정책 공사 발주
 - 건설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한 가수요 증대
 - 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축수요 확대
- 안전관리 체제 및 활동이 극히 미흡한 영세 소규모 업자 급증
 - 안전관리 활동, 안전시설이 극히 저조
 - 여러개 현장 일부공종 도급시행 (근로자의 현장 이동이 잦음)
- 전문 기능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미숙련공의 위험 작업 증가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무리한 공기 단축

2-2. 사회적 현상

- 실직자들의 일시적인 취업장소로 활용
- 전문 인력의 건설공사 취업 기피 (기능 인력 부족을 가중)
- 대부분 성과급을 시행하므로 작업 수행에 부담을 주는 보호구의 착용을 거부하며,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

2-3. 재해예방 관리, 감독 능력의 한계

- 일선행정 기관의 전문 인력부족
- 공단의 건설재해 예방 활동의 한계성 (조직, 권한)

2-4. 근로자 안전의식의 취약성

- 타성에 젖은 작업방법
- 무사 안일한 작업태도
- 건설재해 심각성 미숙지

2-5. 향후 전 망

-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 분위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산업 가동율은 높아질 것이므로
 - 노후설비의 활용과 미숙련 근로자고용에 따른 위험요인은 더욱 증가.
 - 작업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로 인한 재해증가 우려
- 위험요인이 많은 건설공사 수주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 하는 재해자수 및 사망지수 급격한 증가우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강화되었으나, 단시일내 재해예방 성과 기대곤란
 - 근원적 안전성 확보제도의 재해예방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
 - 사내 안전보건관리 체제, 권리감독자의 안전책임부여, 사내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제도등도 금년 3/4분기 이후에야 재해 예방 효과 기대가능
- 따라서 현재의 재해발생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 '90년도는 '89년도보다 1만여명이 증가한 144천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율이 2.1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재해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한 금년재해 감소 목표 달성곤란

- 이에 따라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근로자의 인명과 건강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비등할 우려가 있어 지금 우리 산업안전행정은 심각한 국면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3. 산재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 특별 대책

3-1. 기본방침

가. 노.사의 인식개선에 주력

-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등 제도개선이나 기술개발보급 체제확립등의 수단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야 효과시현 가능
-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재해를 단시일내에 감소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가 급선무임
 - 취약업체 선정본부, 지방합동으로 특별관리
 -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로 의무이행을 촉구

나. 특별관리 체제로 전환

-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유지
 - 본 부 : 비상대책반 설치 및 목표달성 독려
 - 지방노동관서 : 관내 재해원인 분석 및 취약업체 지도감독강화
 - 공 단 : 특별대책수립 및 기술인력 지원
 - 민 간 단 체 : 산재예방 분위기 확산 및 회원사 관리
 - 안전관리대행기관 :대행업체 책임관리
- 산업별특성에 맞는 목표관리
 - 건설업분야와 제조업분야 별도구분 관리
 - 재해증가분야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 집중

3-2. 특별 대책

3-2-1. 재해다발 제조업체 특별관리

가. 목 표

제조업체로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거나 취약요인이 많은 사업장

나. 대 상 선 정

○ 선정기준

- 1) '90년도중 4월말까지 재해자수 3명이상이거나 재해율 1 이상인 업체
- 2) '89재해자수가 5명이상으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상회업체
- 3) '89년이후 '90. 4월말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 교통사고, 광산, 고혈압등 단순사고 제외)
- 4) 전년도 재해자수 4명이상인 업체로서 '90. 4월말현재 전년동기 대비 재해자수가 증가한 사업장
- 5)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재해 발생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선정해야 할 사업장

사 무 소 별

사 업 장 수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7급 직원(과장제외)1인당
마산, 울산 지역소재 지방관서	30개소에 해당되는 업체수
기타지역소재 지방관서	6,7급 직원(과장제외) 1인당 20개소에 해당되는 업체수

* 지방노동관서장의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업체부터 선정하여 감독관 담당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감독관별로 사업장을 배분

다. 업체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전담감독관 책임하에 업체별 관리대장 (별지1서식) 작성 비치

- 전년동기 대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취약 요인 (과거재해 및 점검기록 참조)
- 각종 점검결과 기록 및 유지

○ 업체별 책임관리 체제 확립

- ' 사업장별 전담감독관 지정
- ' 월별 사업장별 재해현황 분석
- ' 재해증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
- ' 지역별 5급이상 전담직원 배치 (1인당 400개소)
- ' 월별, 지역별, 사업장별 재해 현황 분석
- ' 재해감소 목표 미달관서 순회지도

지방노동관서

부 부

라. 특별안전보건 교육실시

○ 사업주 교육

- 대 상 : 취약업체 사업주
- 교육내용 : 재해예방 특별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무

○ 취약사업장 순회교육

- 대 상 : 산재취약요인이 많은 대규모사업장 근로자
- 교육방법 : 기술지도원 주관하에 순회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산업재해 심각성에 대한 시청각 교육. 강의

마. 일제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 감독관 및 지도원
(공단본부) 직원
- 기타지역 : 감독관

○ 점검사항

- 사내안전보건 관리체제. 교육실태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실태
- 기타 산재취약 요인과 예방조치등

○ 점검방법 : 생산현장 직접확인 점검 (별지 2서식)

*사무실내 서류점검만으로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 법령위반사항 발견시 기시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조치 기준 ('89. 3. 23)"에 의거 의법조치
- 유해요인이 많고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공단에 안전진단 실시의뢰
- 재해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감독관이 매월1회이상 사업장 점검 및 재해 예방독려
- * 매월 재해현황을 분석, 재해증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월 점검 대상으로 정할것

○ 기타참고 사항

- '90개선 계획수립 대상업체의 경우 개선계획 이행실태 확인에 주력
- '90년도중 기점검을 실시한 업체의 경우도 포함하며 특히 과거 점검결과 법령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은 시정결과보고 및 종결 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전부 점검실시
- '90정기감독 대상업체로서 아직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감독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점검방식으로 실시
-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 감독관이 직접현지 확인 점검실시

바. 안전진단 실시

○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 일제점검결과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사업장 (기술적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 '89재해율이 3 이상인 사업장
 -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진단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국고진단 (안전보건 기술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

- 선정해야할 사업장수 : 사무소당 10개소 이상

○ 추진 방법

- 일제점검결과 진단이 필요한 사업장에 선정 본부에보고
- 공단본부에서 진단계획수립 및 일정통보
- 감독관 1인 및 전문가 3인으로 진단반구성 진단실시

○ 진단 내용

-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여부
- 시설, 공정, 작업환경등 기술적 개선사항
- 작업관리등 기타 관리적 개선사항

3-2-2. 건설업 분야 재해예방활동강화

가. 재해다발 건설현장 특별관리 (지방)

- 대 상 : 공사금액 10억원이상 전국 사업장 (1,000개소)
 -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지역 : 사무소당 30개소
 - 기타지역 : 사무소당 15개소

- 선정기준
 - 재해율이 특히 높은 사업장
 - 공사착수이래 중대재해가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방 법
 - 감독관별 책임관리 현장 균등 배분 (가급적 건설안전전담감독관지정)
 - 업체별 재해발생카드 작성, 기록 유지 (별지 3서식)
 - 감독관 개별 분담사업장에 대한 매주 1회이상 점검 실시 (별지 4서식)

- * 안전공단 기술지도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 건설현장 소장 교육
 -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강화 : 30억이상 214개소

나. 재해다발 건설현장 긴급점검 (본부)

◦ 대 상 : 30개소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

* 각 지방청별로 재해율이 특히 높거나, 중대재해다발 사업장중 5개소
씩 본부에서 선정

◦ 점 검 반 : 6개조 (1개조 5명)

- 본부 산업안전과 직원
- 지방 사무소 산업안전 감독관
- 산업안전공단등 관련단체 전문요원

◦ 점검기간 : 별도지침 시달

◦ 내 용

-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여부 감독
- 중대재해 안전조치의 이행상태

◦ 조 치 : 법위반사안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

다. 지하철 및 신도시건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관려공사 주관 시. 도. 지하철공사 및 해당 업체와 공조체제 유지

◦ 기 시달된 지하철 및 신도시건설 재해예방대책의 실시 지침에 따라
철저히 지도, 감독.